

춘천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4542 판결 [구상금등 청구 등]

전 문

원고강원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1. 18.

판결 선고2017. 2.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078,381원 및 그 중 8,879,122원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6. 8.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6. 3.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3. 21. 접수 제15449, 1545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4. 1. 2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주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15,000,000원, 보증기한 2019. 1. 22.까지,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여 원주농협으로부터 15,000,000원을 2019. 1. 22.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2016. 3. 23. 원리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주농협이 2016. 4. 2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여, 원고는 2016. 7. 7. 원주농협에 대출원리금 8,919,0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39,895원을 회수하여 미변제 대위변제금은 8,879,122원이 되었다.

3) 이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6. 7. 22. 현재 대위변제금 8,879,122원 및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2016. 7. 22.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6,719원 및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가지급금 152,540원 합계 9,078,381원이다.

나.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은 2016. 3. 21.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되, 각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15449,

1545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A의 재정상황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은 시가 13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과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가 있었고, 소극재산은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90,000,000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5,451,000원, 우리파이낸셜에 대한 대출채무 8,617,000원, 알씨아이파이낸셜에 대한 대출채무 23,200,000원,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10,000원 등 합계 137,468,000원의 금융채무와 원고가 보증한 원예농협에 대한 대출채무 9,078,381원에다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80,000,000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9,078,381원 및 그 중 8,879,122원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 8.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 이틀 후에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2016. 7. 7. 원주농협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161,000,000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은 226,456,381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이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과 30,000,000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피고 A에게 생활비를 실제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위 나.에서 본 바와 같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피고 B의 사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창현

별지